

서울특별시 주거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 설명

○ 존경하는 김희걸 도시계획관리위원장님!

그리고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선배 동료 위원님 여러분!

국민의 힘 비례대표,

도시계획관리위원회 위원 이성배입니다.

본 위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주거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.

○ 본 일부개정조례안은,

「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」 제23조의3에 따라 재해 또는 질병, 경제적 사유 등 시장이 긴급히 주거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에게 지역주거복지센터를 통해 공공임대주택을 임시거처로 제공하고 관련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.

○ 현행 조례에서는 화재 등 재난으로 인한 주거상실의 위기에 처한 가구에 공공임대주택을 우선공급할 수 있게 되어 있으나, 재난이 아닌 감염병이나 질병, 가정폭력, 실직 등에 따른 긴급주거지원은

별도의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.

- 특히 「공공주택 특별법」에 ‘공공임대주택의 임시사용에 관한 특례조항’이 마련되어 있음에도 현재 서울시 주거복지센터와 자치구는 서울주택도시공사가 아닌 한국주택토지공사가 확보한 장기미임대주택을 긴급임시주택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.
- 이에 서울시 주거복지사업의 유형으로 긴급 주거지원사업을 조례에 명시하고 지역 주거복지센터로 하여금 대상자를 발굴 및 지원하며, 서울주택도시공사의 미임대주택을 임시거처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.
-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, 앞서 말씀드린 제안 취지를 감안하셔서 아무쪼록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